협의 이혼 절차

최은순/변호사 www.womenlaw.co.kr

갑돌이와 갑순이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3년을 살았는데, 성격차이와 시댁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키로 하였습니다.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위자료, 재산분할조로 5,000만원을 주고, 둘 사이의 자녀 양육과 친권행사는 갑순이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그러나 갑순이는 '5천만원을 사정이 안 좋아서 이혼 후에 주겠다'는 갑돌이의 말만 믿고 이혼했다가 갑돌이가 마음이 변해 이혼만 해주고 돈은 한 푼도 못 받는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. 합의된 사항을 잘 지키도록 하려면 어떠한 조치나 방법을 취해야 하며, 이혼도 간단한 절차로 진행시키고 싶어 합니다. 6개월 이상 별거를 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진위여부와 기타 자세한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이혼사유가 무엇이든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고, 부부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이혼으로 이혼하는 방법 외에는 '자동이혼' 제도는 없습니다. '일정기간 별거하면 자동이혼이 된다' 는 속설은 아마도 장기간의 별거가 법정이혼사유인 '악의의 유기' 나 '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' 등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와전되어 잘못 알려진 상식으로 보여집니다. 따라서, 위자료, 재산분할, 자녀양육 등에 관한 여러 조건들에 합의와 함께 이혼에도 서로 동의한다면 둘은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.

둘 사이의 합의사항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을 한 후 한 통씩 나눠갖고, 그 합의내용에 갑돌이의 갑순이에 대한 금원지급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이를 지급받고 난 후 둘이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. 만약 그렇지 않고 부득이 협의이혼을 먼저 해야할 사정이라면 갑돌이가 지급키로 한 금원에 대해 약속어음의 형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해 두면 추후 미지급의 경우에 재판절차없이 곧바로 공증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.

협의이혼 절차는 먼저 부부의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· 지방법원 또는 지원, 시 · 군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. 신청 후에는 부부 각자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서 정해 준 때와 장소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받게 됩니다.

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이혼신고서와 확인서 등본을 부부에게 1통씩 교부하게 되는데 이 확인일자로부터 부부 중 일방이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 · 시청 · 읍 · 면사무소나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절차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기간 내에 부부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무효가 되어 그 후 다시 별도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

만약, 협의이혼 의사확인 후에 마음이 변하여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관할구청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. 하지만, 이미 부부 중 일방이 협의이혼신고를 해 버린 경우에는 이혼의사철회는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, 협의이혼시에는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고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그 전에 쌍방이 파국을 막기 위한 부부상담을 받거나 냉각기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PPEK